

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73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 위치 : 강남구 등촌동 656, 658 일대 ○ 내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2,638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13,174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 강서구 등촌동 656, 658 일대 화곡중심</p> <p>3. 주요요지 ○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도지역변경</th> <th rowspan="2">용도지구 지 정</th> <th rowspan="2">면적 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당 초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</td> <td>준주거 지역</td> <td>일반상업 지역</td> <td rowspan="2">도시설계 지구 (59,805㎡)</td> <td>22,499</td> <td rowspan="2">신월 지구 중심</td> </tr> <tr> <td>강서구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</td> <td>일반주거 지역</td> <td>일반상업 지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도시계획사항 : 준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 ○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 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 22,499㎡의 준주거지역과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 37,306㎡의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, ○ 아울러 이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이 지역이 신월지구 중심지로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동시에</p>	의안 번호	73	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 정	면적 (㎡)	비고	당 초	변 경	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	준주거 지역	일반상업 지역	도시설계 지구 (59,805㎡)	22,499	신월 지구 중심	강서구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	일반주거 지역	일반상업 지역	<p>지 32,638㎡에 대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안은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변경안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며, ○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도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 ※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화곡지구 중심지역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74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되어, ○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75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</p>	의안 번호	74	의안 번호	75
의안 번호	73																					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 정	면적 (㎡)	비고												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
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	준주거 지역	일반상업 지역	도시설계 지구 (59,805㎡)	22,499	신월 지구 중심																			
강서구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	일반주거 지역	일반상업 지역																						
의안 번호	74																							
의안 번호	75																							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: 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○내용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3,237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33,237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33,237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 ○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신정지구 중심지역으로서 중심지역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요구된 지역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76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76	<p>염창동 274 일대 42,434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용도변경 예정지역 중 11,251㎡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 ○이 지역은 자치구에서 정한 등촌삼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○그러나 이 지역은 공항로 연변지역으로서 양천구 목동 606-18 일대도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목동지역도 준주거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77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위치: 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○내용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17,106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17,106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17,106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또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 ○이 지역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,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, 발전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	의안 번호	77
의안 번호	76				
의안 번호	77				